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16.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2. 1. 고병준 의원 외 7인

나. 회부일자: 2023. 2. 6.

다. 상정일자: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. 2. 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고병준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‘학교 밖 청소년’의 의회 체험 활동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의 정의를 정비하여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 의회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2조)

## 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의회 체험 대상에 있어서 “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”으로 한정된 것을 “학교 밖 청소년”에게 확대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차별 없이 지방자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.

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2조제1호 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정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된 사항을 ‘대안교육기관’과 ‘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의회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로 판단됨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청소년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음.
-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모의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-19 발생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음.

<표.1 마포구의회 모의의회 실시현황>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실시 횟수	2회	1회	1회	
참여 학교	2개교	1개교	5개교	
참여 학생	65명	23명	27명	
지출 예산	312천원	-	94천원	간식비

- 개정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“학교 밖 청소년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복지<sup>1)</sup> 기회 제공을 위해 ‘대안교육기관’과 ‘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에 등록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 사항으로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.
- 다만, 청소년 의회체험이 차별적 교육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에서 발전된 특성화적 교육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 후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동기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제고될 수 있을지를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, 상기 사항의 보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사업 계획시 의회 체험 대상자들의 소속별, 학년별, 연령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의회 체험 내용의 세밀한 구성으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.

---

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제2조

1. “교육복지”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,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·부적응,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

-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